

## 청약제도안내

### □ APT 청약안내 : 특별공급

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국가유공자, 노부모부양,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(임대)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특별공급 소득기준	특별공급이란	기관추천	신혼부부
다자녀가구	노부모부양	생애최초 주택구입	청년
신생아	이전기관종사자 등	외국인	

신혼부부(민영주택)	신혼부부(국민주택)	신혼부부(공공주택-일반형, 선택형)	신혼부부(공공주택-나눔형)
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#### 신혼부부(공공주택-일반형, 선택형)

대상주택	전용면적 85m <sup>2</sup> 이하의 공공분양주택·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
공급 물량	건설량의 10% 내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혼부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(만7세 미만) 자녀가 있는 분</li> <li>예비신혼부부 :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</li> <li>한부모가족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(만7세 미만)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</li> </ul>
청약자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주택세대구성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<b>세대</b>[청약신청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) 및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)] <b>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</b>을 말합니다. * 분양권등 :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<b>분양권등</b> 참조</li> <li>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(배우자 분리세대)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·비속을 포함합니다.</li> </ul> </li> <li>* 세부사항은 <b>무주택세대구성원</b> 참조</li> </ol> <p>2. 소득기준 :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구로자 월평균소득의 130% 이하(부부 모두</p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일반형) 세대의 부동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각각 아래 기준 이하일 것 공공주택(일반형)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참조</li> <li>- (선택형)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(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)</li> </ul> <p>※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비율이 10%p 완화 적용되오니(소득요건 비율이 200%인 경우 제외),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(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)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%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
청약통장	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
선정방법	<p>① 소득구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1단계) 우선공급 (70%) :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인 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②의 순위에 따르고,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, 지역 내 경쟁 시 ③의 배점 순으로 입주자 선정</li> </ul> </li> <li>- (2단계) 일반공급 (20%) :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% 초과 130% 이하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초과 140% 이하)인 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단계 낙첨자를 포함</li> <li>*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②의 순위에 따르고,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,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</li> </ul> </li> <li>- (3단계) 추첨공급 :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 중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% 초과 200% 이하인 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2단계 낙첨자를 포함</li> <li>*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,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</li> </ul> </li> </ul> <p>② 순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1순위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혼부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, 전혼자녀 제외</li> <li>* 「민법」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</li> </ul> </li> <li>· 한부모가족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- (2순위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</li> <li>· 예비신혼부부 (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)</li> </ul> </li> </ul> <p>③ 배점 : 신혼부부(일반형,선택형) 특별공급 배점항목 참조</p>